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2

발의연월일: 2020. 9. 24.

발 의 자:서영석·허종식·소병훈

인재근 • 이해식 • 김승원

문진석 • 박홍근 • 이정문

김경만 • 박상혁 • 조승래

설 훈・홍성국・윤준병

유영덕 · 오영환 · 윤재갑

이원욱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자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규정된 중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재의 수단 및 금액의 규모적인 측면에서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의 중요 준수사항들은 사실상 동

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가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모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97조제10호 및 제101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있다.

-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 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제9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101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	2
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	
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
	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
	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u> <신 설></u>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u>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u>
	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
	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u> <신 설></u>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
	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
	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u> <신 설></u>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

<신 설>

<신 설>

<u>5.</u> (생 략) ③ ~ ⑦ (생 략)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

 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

 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
 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
 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
 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
 해하지 말 것
- 11.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u><신 설></u>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 략)
-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신 설>

1. ~ 9. (현행과 같음)
10.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
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
<u>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u>
<u>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u>
한 자는 제외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u>)
②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u> </u>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
<u>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u>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